



노인주거복지시설

老人住居福祉施設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

-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
##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

-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(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).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노인주거복지시설 | 양로시설     |
|          | 노인공동생활가정 |
|          | 노인복지주택   |

## 2

##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

### 1 양로시설

-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### 2 노인공동생활가정

-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### 3 노인복지주택

-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·생활지도·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

양로시설

養老施設 Home for the aged

-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

### 양로시설의 비용에 의한 구분과 입소대상 자격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무료<br>양로시설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가 아닌 65세 이상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로,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시설이다.           |
| 실비<br>양로시설 |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,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, 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, 실비보호대상자도 일부비용을 내야 한다. |
| 유료<br>양로시설 |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, 60세 이상이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<br>예 실버타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### 노인공동생활가정

老人共同生活家庭 The Elderly Group Homes

-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

###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 자격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무료<br>입소대상자 | 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, 신청접수는 읍면동에서 접수가능,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,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비<br>입소대상자 |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, 계약을 진행할 때는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, 심사결과를 시설장에게 통보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료<br>입소대상자 |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,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인정 시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. |



### 노인복지주택

老人福祉住宅 Elderly welfare housing

-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·생활지도·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

### 노인복지주택의 운영

- 노인복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입주자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다.
- 개인의 자금으로 입주비용을 지급하지만, 노인복지법 상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, 입주 등에서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규정이나 제약을 갖는다.
- 입주자를 위한 건강의료, 생활보조, 취미여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복합주거 단지라 할 수 있다.

###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



#### 노인복지법

##### 제33조의2

-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다
  -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(이하 “입소자격자” 라 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.
    - 1. 입소자격자의 배우자
    - 2.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· 손자녀
  -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.
  - ④ 삭제

###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



#### 노인복지법

##### 제33조의2

-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다
  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,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(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)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.
  -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



#### 노인복지법

##### 제33조의2

-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다
  -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·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  - 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Q** 다음의 핵심 제시어와 세부 제시어를 참고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인드 맵핑 해보세요.(내용 정리를 위해 단어,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각화 해보세요.)

